

청주교육대학교 교수업적평가 규정

제정	2003. 04. 30.	규칙	1104호
전부개정	2008. 11. 10.	규칙	1212호
개정	2012. 04. 23.	규칙	1292호
개정	2013. 02. 21.	규칙	1305호
개정	2016. 04. 27.	규칙	1410호
개정	2017. 03. 01.	규칙	1434호
개정	2017. 12. 29.	규칙	1454호
개정	2018. 02. 08.	규칙	1458호
개정	2019. 02. 28.	규칙	1477호
개정	2020. 04. 03.	규칙	1508호
개정	2022. 05. 26.	규칙	1607호
개정	2023. 05. 31.	규칙	1635호
개정	2026. 02. 26.	규칙	168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임교원(이하 “교수”라 한다)의 업적을 공정하게 평가·관리·활용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수의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점수”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평가항목별 배점과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된 점수이다.
2. “취득점수”는 영역별 원점수를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원점수를 순위점수로 변환한 점수이다.
3. “환산점수”는 취득점수에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역별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100점 만점으로 처리한 점수이다.

제3조(평가영역) 교수의 업적평가는 교육영역, 연구영역, 봉사영역으로 한다.

제4조(평가주기 및 평가대상기간) ① 업적평가는 매 학년도마다 실시한다.

② 총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과 다른 기간을 정하여 별도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이 규정에 의한 업적평가의 결과는 교수의 승진 및 재임용 심사, 정년보장의 심사, 연구보조비(성과급) 지급, 연구년 교원 및 업적 우수교수 선정, 성과연봉 지급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제 2 장 심의기구

제6조(교수업적평가위원회) ① 교수업적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하되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본교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업적평가의 기본원칙 및 시행지침에 관한 사항
2. 업적평가 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업적인정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업적 우수교수의 선정 및 예우
5. 기타 업적평가에 관한 중요 사항

제7조(회의) ① 교무처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 교무처 교무팀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회의를 지원한다.

제 3 장 업적관리·평가

제8조(업적 등록) 교수는 업적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연구행정시스템에 등록하고 업적 자료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업적검증부서에 제출한다.

② 행정부서는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교수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업적 검증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업적 등록 및 검증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업적 기준일) 업적 등록시 필요한 기준일에 관해서는 총장이 정한다.

제10조(업적검증 및 업적평가) ① 교무처는 업적의 1차 검증부서가 되며, 최종 심의는 교수업적평가위원회가 담당한다. 다만, 총장은 교무처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일부 업적의 검증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교무처는 교수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정확하게 검증하고, 증빙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부적합한 경우에는 승인을 보류하고, 필요한 정보와 자료의 보완을 평가대상자에게 요구한다.

제11조(업적평가 대상기간) ① 매 학년도 업적평가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에 따라 직전 학년도(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에 귀속되는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전 학년도에 귀속되는 업적 중 당해 학년도 4월말까지 연구행정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적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제12조(평가방법) ① 교육·연구·봉사 영역의 원점수는 각각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서 정하는 평가항목, 배점 및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한다.(2016. 4. 27., 별표1 개정 2019. 12. 28.)

② 업적평가의 영역별 반영비율은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선택영역 5%는 교수 개인평가점수에 유리한 영역에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 업적평가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산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점수, 취득점수, 환산점수의 계산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⑤ 성과연봉 최하위 C등급 공통기준은 별표 6과 같다.(2017.3.1.)

제13조(연구년 교원/신임교원/휴직교원등의 평가방법) ①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년 기간이 평가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최근 3개 학년도의 취득점수를 평균한 점수를 취득점수로 인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연구년 기간이 2년에 걸치는 경우 1차 년도는 최근 3개 학년도의 취득점수를 평균한 점수를 취득점수로 인정하여 평가하고, 2차 년도는 연구년 개시 직전 학기의 실적과 연구년 종료 직후 학기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수 인정은 교육과 봉사 영역에 한한다.

④ 신임교원의 평가는 최초 업적 평가 시에는 당해 신임교원이 소속된 평가단위 내에서 기존 교원과 분리하여 업적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평가단위 내 재직교원과 같이 업적평가를 실시한다.

⑤ 2학기에 신규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도 1학기에 신규 임용된 교원과 업적평가를 함께 실시한다.

⑥ 출산휴가 교원은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한다.

※점수 계산 : (평가기간중 취득점수 × 12/실제근무 개월 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

⑦ 공무상질병휴직교원, 파견교원은 직전 3개 학년도의 교육·봉사점수를 평균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총장의 임기만료시 평가방법) 대학의 장 재직기간 동안의 업적 평가 점수는 평가단위내 재직교원의 평균점수를 부여한다.

제 4 장 보 칙

제15조(비공개) ① 업적평가의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제외한 결과자료는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재심청구) ① 업적 등록 및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교수는 7일 이내에 교무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교무처장은 자체적으로 검토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이유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회에서 재심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인이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④ 교무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7조(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부 칙(2008. 11. 10. 제121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기) 2008년 3월 1일 이후 귀속되는 업적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1. 4. 21. 제127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기)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 이후 귀속되는 업적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2. 28. 제128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기)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 이후 귀속되는 업적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4. 23. 제129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기)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 이후 귀속되는 업적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 2. 21. 제13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기)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 이후 귀속되는 업적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4. 27. 제14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 1. 제14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29. 제145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기)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 업적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 2. 28. 제145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제12조제1항의 별표1, 별표3은 2018년 3월 1일 업적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2. 28. 제147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제12조제1항의 [별표1] <수업평가설문지> 는 2019년 3월 1일 이후 귀속되는 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4. 3. 제150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제12조제1항의 별표3은 2020학년도 1학기 업적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5. 26. 제 160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제12조제1항의 별표1과 별표3은 2022학년도(대상기간 : 2021.3.1.~ 2022.2.28.)에 실시하는 교수 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 5. 31. 제16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제12조제1항의 별표2와 별표3은 2023학년도(대상기간 :

2022.3.1.~ 2023.2.28.)에 실시하는 교수 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단, 제12조제1항의 별표3의 교수사정관과 위촉사정관의 배점 변경은 2024학년도(대상기간 : 2023.3.1.~ 2024.2.29.)에 실시하는 교수 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1685호, 2026. 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제12조제1항의 별표3은 2027학년도(대상기간: 2026.3.1.~ 2027.2.28.)에 실시하는 교수 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교육영역 평가항목 및 배점<개정 2022.5.26.> <개정 2026.2.26.>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산 정 기 준	
수업 (60)	수업 계획서 제출		5	5점-0.2×(기한 내 미제출 과목 수)	
	수업 시수 (대학의 심화과정 소속 교원과 대학의 심화과정을 겸무하는 교원의 대학원 수업은 3시간까지 포함 가능)		7.5	6.0점+ 0.4×(담당 시수 - 책임 시수)	
	수업 평가		12.5	수업평가점수 × 5 - 12.5 (계산 결과 0점 이하는 0점으로 처리) 단, 교육전문대학원 소속 교원의 대학원 수업평가 점수는 Z^{대학원}점수를 해당 학기의 학부 수업평가 Z^{학부}점수에 대입하여 얻은 환산 점수를 적용	
	출석부 및 성적표 제출		5	5점-0.2×(기한 내 미제출 강좌 수)	
학생지도 (50)	학부 졸업 논문 지도 (실기 지도 포함)	1학기	3.5	기본점수 부여	
		2학기	6.5	2명 이상	
			5.0	1명	
			3.5	0명	
	석사 배출 실적	구분	논문	학점대체	
		1학기	4.0	4.0	기본점수 부여
		2학기	6.0	4.0	2명 이상
			4.5	3.5	1명
			3.0	3.0	0명
	박사 배출 실적	구분	논문		
		1학기	2.5		기본점수 부여
		2학기	7.5		2명 이상
			5		1명
			2.5		0명
	교육실습 지도		10	연간 3회이상	
			9	연간 2회	
			8	연간 1회	
			7	연간 0회	
	교외학생활동지도	1학기	1.5	기본점수 부여	
		2학기	3.5	3회 이상	
			2.5	1-2회	
			1.5	0회	
	학부 학생 지도 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부지도 교수 (1개 학기)		2.5	2개 이상 담당	
			2.2	1개 담당	
			1.8	0개 담당	

비 고	1. 학기 단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단, 교육실습지도는 연간 단위로 구분하고, 석사배출실적, <u>박사배출실적</u> 및 교외학생활동지도의 2학기 점수는 당해 학년도에 지도한 총인원 또는 총 횟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2. 수업평가 점수는 교수가 맡은 전체 반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학생이 부여한 문항별 평가점수를 학생 개인별로 합한 후 문항수로 나누어 학생 개인별 평가 점수를 산출한다. -학생 개인별 평가점수를 합산한 후 학생 수로 나눈다. - <u>$Z^{\text{대학원}} \text{점수} = (\text{과목평가점수} - \text{평균}^{\text{대학원}}) \div \text{표준편차}^{\text{대학원}}$</u> - <u>$\text{환산점수} = Z^{\text{대학원}} \text{점수} \times \text{표준편차}^{\text{학부}} + \text{평균}^{\text{학부}}$</u> 3. 석사배출실적은 논문과 학점대체 가운데 교수에게 유리한 것 1개를 선택하여 산출한다. 4. 학과 교수 수의 과다로 인해 학부 학생 지도 교수를 맡지 못하는 경우는 멘토교수 등 학교에서 정한 학생지도 교수 대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성장지원지도교수제 인정) 5. 학부 학생지도교수 실적에는 봉사 영역에서 인정하는 동아리 지도교수 실적은 제외한다.
-----	--

<수업 평가 설문지> <개정 2019. 2. 28.>

청주교육대학교	학년도 제 학기	담당교수		교과목명	
---------	----------	------	--	------	--

본 수업 평가 설문지는 익명으로 작성되며, 이번 학기 교과목의 수업 진행에 대한 학생들의 솔직한 의견을 파악하여, 앞으로 보다 나은 수업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은 각 평가 문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평가 문항에는 한 곳에만 V표시 하시오.

	설문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 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수업 계획서 및 강의 안내를 통해 강의 목적, 내용, 방법, 평가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⑤	④	③	②	①
2	제시된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의 강의를 진행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3	교수는 적절한 난이도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노력하였다.	⑤	④	③	②	①
4	교수는 강의 시간을 준수하였고 준비를 철저히 하였으며 학생들이 수업에 몰입하도록 열의 있게 지도하였다.	⑤	④	③	②	①
5	강의에 사용된 자료는 강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6	강의를 듣기 전에 비해 해당 교과에 관심을 더 갖게 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7	교수는 학생의 활동이나 과제에 대해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였으며, 수업 참여자간에 원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	⑤	④	③	②	①
8	수업 목표, 내용 및 방법에 따른 적절한 과제가 제시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9	이 강의가 예비교사로서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10	이 강의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⑤	④	③	②	①

※ 【선택 작성】 모든 항목에서 ②점 이하의 점수를 기재하는 학생 대상의 서술형 문항

모든 설문 항목에서 ② 점 이하를 기재한 이유가 무엇인지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작성】 이 수업의 장점과 개선이 필요한 점을 목표, 내용, 활동, 평가, 상호작용 등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수업의 장점을 더욱 보강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고, 개인의 감정적 표현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답변

<예>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생각하는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강의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답변

<예> 재미있어요 수업이 너무 어려워요

[별표 2] 연구영역 평가항목 및 배점<개정 2023. 5. 31.>

<공 통>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배점	산정기준																	
논문	공인된 국제학술지(SCI급)		200	<table><tr><td colspan="3">단독 100%</td></tr><tr><td></td><td>책임</td><td>공동</td></tr><tr><td>2인</td><td>80%</td><td>70%</td></tr><tr><td>3인</td><td>60%</td><td>50%</td></tr><tr><td>4인 이상</td><td>45%</td><td>35%</td></tr></table>			단독 100%				책임	공동	2인	80%	70%	3인	60%	50%	4인 이상	45%	35%
	단독 100%																				
		책임	공동																		
	2인	80%	70%																		
	3인	60%	50%																		
	4인 이상	45%	35%																		
	공인된 국제학술지(편집인이 3개국 이상)		120																		
	기타 국제학술지(편집인이 3개국 미만)		50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120																		
	한국연구재단 미등재 전국학술지 및 교내학술지		50																		
지역학술지		40																			
기념논문집 논문		40																			
일반 정기간행물에 실린 평론, 논평, 서평, 해설		30																			
박사학위논문		200																			
전문저술 (단행본)	국제 전문학술서(해외출판)		250	단독: 100% 2인: 70% 3인: 50% 4인 이상: 35% 일반 전문 저술에 전자책은 포함 하고 참고서와 문제집은 포함하지 않음.																	
	국내 전문학술서		200																		
	전문도서 편저		80																		
	전문도서 번역서		150																		
	전문도서 편역서		80																		
교과용 도서	교과용 도서(교사용 지도서)		100																		
일반저술	비전문 도서		120																		
	도서에 실린 문예작품	소설, 희곡, 평론	80																		
		시, 시조, 수필, 동화	20																		
학술발표	SCI급 학술지를 발간하는 국제 학술단체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주제발표 또는 기조 강연	80																		
		발표 논문	50																		
		지정 토론	30																		
	기타 국제학술단체(참가국 3개국 이상)에서 주관하는 학술단체	주제발표 또는 기조 강연	45																		
		발표 논문	25																		
		지정 토론	15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학회 전국학술대회	주제발표 또는 기조 강연	50																		
		발표 논문	30																		
		지정 토론	20																		
	기타 전국 학술회의	주제발표 또는 기조 강연	35																		
		발표 논문	15																		
		지정 토론	10																		
기타 창작	등록된 컴퓨터 프로그램		100																		

연구보고서	정부 및 외부연구소 연구보고서	50	책임 : $100 \times \{2/(n+1)\}$ 공동 : $100 \times \{1/(n+1)\}$ (n은 총 연구자 수)
	교내 연구보고서	30	
	대학발전계획, 평가보고서(단, 개인별 인정)	20	
외부연구비 수혜	5천만원 이상	60	
	3천만원 이상	45	
	1천만원 이상	30	
	1천만원 미만	15	
특허 및 연구 관련 수상	특허	120	
	국제 학회(기관)의 포상	60	
	국내 학회(기관)의 포상	30	
비 고	1. 동일·유사·중복 업적은 유리한 하나의 세부평가항목으로만 평가한다. 2. 공인된 국제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의 평가기준을 준용해서 인정한다. (SCI, SCIE, A&HCI, SSCI, SCOPUS 등) 3. 저서는 n쪽일 때 원점수에 n/200을 곱하며, n>200이면 만점으로 처리한다. 4. 전문학술서의 경우 인용과 참고문헌 표기가 되어 있는 서적이어야 한다. 5. 저서의 1차 개정판은 원점수의 40%, 2차 개정판은 20%로 점수를 부여한다. 도서 개정판은 30%이상 개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개정판에 새롭게 저자로 들어간 경우 초판 인정률을 적용한다. 6. e-book(ISBN)은 저서 및 번역서의 배점에 준하여 적용한다. 7. 단독 및 공동연구 논문, 저서, 연구보고서의 경우 업적 계산은 1인 100%, 2인 70%, 3인 50%, 4인 이상 35%, 7인 이상 20%, 10인 이상 10%를 적용하되 공동 저술에서 연구책임자 혹은 교신 저자의 경우 10% 가산한다. 8. 연구비 수혜 액수를 연구 책임자의 경우 연구비 총액의 $100 \times \{2/(n+1)\}$ 을 적용하고 공동 연구원의 경우 $100 \times \{1/(n+1)\}$ 을 적용한다. 9. 외부연구비 수혜는 다른 세부평가항목과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10. 외부연구비는 본교 산학협력단이 관리하는 연구비만 인정한다.		

<미술부문 추가>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산 정 기 준
전시 발표	국외 공인 전시회	120	-단독: 100% -2인: 70% -3인: 50%
	국내 공인 전시회	120	-4인 이상: 35%(단, 심의를 거친 초대, 기획전 : 50%)
	공인된 국제전	80	참가국 2개국 이상
공모전	국제 공모전	100	대상: 100% 대상과 입선 사이: 70% 입선: 50%
	전국단위의 공인된 공모전	70	대상: 100% 대상과 입선 사이: 70% 입선: 50% 시도단위의 공모전 대상: 50%, 특선: 30%
조형물	환경 조형물	80	벽화 포함
비 고	1. 국내외에서의 전시회는 국내외 대학 전시장을 포함한 공인된 전시장에서의 전시만 인정하되, 대학전시장은 대학 미술관 또는 갤러리라는 공식명칭을 쓰는 곳에 한정한다. 2. 전시작품에서 70% 이상 새로운 작품으로 대체되었을 경우 별도의 전시회로 인정한다. 3. 각종 포상은 봉사 점수로 한다. 4. 비평 등 서지자료에 의한 연구 결과는 인문학의 연구 성과로 별도로 계산한다. 5. 본 조항에 포함되지 않은 유형의 전시회는 ‘미술협회’ 등 미술전문단체의 ‘공인’을 요구하여 교수업적평가 관리위원회에서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체육부문 추가>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산 정 기 준
교수 본인 입상		국제규모	120	공인된 대회만 인정 1위: 100% 2위: 70% 3위: 50%
		전국규모	120	
		시도규모	60	
본교 학생 입상 (교수가 지도한 경우)		전국교대 대회	90	1위: 100% 2위: 70% 3위: 50%
무 용	발표	공인된 발표회	120	개인발표: 100% 단체발표: 70%
	안무, 출연, 연출, 감독	국제규모	100	공인된 대회만 인정
		전국규모	75	
		시도규모	50	
비 고		전국교대 대회는 7개 이상의 교육대학이 참여한 경우를 말하며, 2회까지 인정함		

<음악부문 추가>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산 정 기 준
발표 공연	국외		120	단독: 100% 2인참여: 70%(전 프로그램 50% 이상 담당시 해당) 3인이상: 25%(한 프로그램 이상을 담당하는 경우 인정)
	국내		120	작곡·편곡 발표의 경우 초연만 인정
	오페라		120	주역: 100% 조연: 70% 단역: 30%
	국내외 인정된 전문 교향악단과 협연		70	20분 내외 협연
	공연 양상블	2인	70	전 프로그램을 100% 연주하여야 함
		3-4인	50	
		5-8인	35	
	전문단체에 의한 창작품 초연		60	국내외 인정된 전문단체에 한함
	개인 작곡 발표회 연주단원		20	전 프로그램을 100% 연주하여야 함 국내외 공인된 것에 한함
	독창회 및 독주회 반주		40	
지휘	관현악단 연주회 지휘		120	전 프로그램의 100%지휘: 100% 50% 이상 지휘: 70% 한 프로그램 지휘: 25%
	합창단 연주회 지휘		60	국내외 인정된 관현악단·합창단에 한함 (동호인단체, 종교단체, 학생연주합창단 제외)
작품집	작곡집, 편곡집, 채보집, 개인작품집		100	전문 출판사에서 출판된 것에 한함
	전문 음반 제작		70	전문 음반 제작사가 제작한 것에 한함
비 고	1. 국외에서의 연주는 공인된 공연장에서의 연주만 인정한다. 2. 공인된 연주회장은 500석 내외의 대학의 대형 학술문화 공간을 포함하며, 교회, 초·중등학교 강당 및 체육관에서 연주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3. 동일한 곡목으로 4년 이내에 행한 연주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4. 동일한 레퍼토리로 여러 지역에서 순회 연주할 경우 그 전체 순회 연주를 1건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기본점수 + (기본점수× 연주횟수× 0.1) 5. 순회연주라 하더라도 원래의 연주회 곡목에서 70% 이상 새로운 곡으로 대체되었을 경우는 별도의 연주회로 인정한다. 6. 이미 연주회에서 발표한 레퍼토리로 음반을 제작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70% 이상 새로운 곡으로 대체되었을 경우는 별도의 업적으로 인정한다. 7. 본 조항에 포함되지 않은 유형의 연주회는 주최기관 및 음악회의 수준을 고려하여 교수 업적 평가위원회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별표 3] 봉사영역 평가항목 및 배점 <개정 2020.4.3.> <개정 2022.5.26.>
<2023.5.31.> <2026.2.26.>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비 고	
교내	책임 시수 4시간 이하 보직자	70		
	책임 시수 5시간 이상 보직자	8		
	교수사정관	5		
	학과장 또는 전담교수 회의 참석	8	90%이상: 8, 60~90%: 6 60%이하: 3	
	기획처 기획연구위원회 회의 참석			
	대학원 주임교수(학과장 겸직자 제외) 회의 참석	4	90%이상: 4, 60~90%: 3 60%이하: 2	
	교수회의 참여	1(회당)	비고 참조	
	학칙 및 규정상 명시된 각종 위원회 위원	1(회당)	최대 15점 인정	
	학칙 및 규정상 명시된 각종 위원회의 소위원회 위원	1(회당)		
	각종 센터 실행위원회 위원	1(회당)		
	대학요구에 따라 구성된 특별위원회/특별 과제팀	1(회당)		
	교수협의회 임원(회장, 부회장 및 간사)	6		회장 6점, 부회장 및 간사 4점
	동아리 지도교수	3	2건까지 인정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타 교내 봉사활동	1	5회까지 인정	
	4대 폭력 예방교육 동영상 이수 및 특강 참석 (성희롱,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2	의무이수시간(4시간)완료 시 인정	
	교내 각종 연수원 및 교육원 강의, 임용특강 (2시간 이상)	1	5회까지 인정	
	교내 학술대회 조직·운영위원	1	"	
	입시 업무	학부 (출제, 면접 등)	2(건당)	
		대학원 (면접)	1(건당)	
		위촉사정관	5	
교외	공인된 국제학술지(한국연구재단의 평가기준을 준용)를 발행하는 국제학술단체 회장 및 부회장	5	2회까지 인정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를 발행하는 국내학술단체 회장 및 부회장	5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를 발행하는 학술단체 편집 위원	4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임원과 위원	4	"	
	교과서 심의, 연구, 검증 위원	4	"	
	각종 민간단체 임원 및 위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를 발행하는 학술단체 포함)	3	"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타 교외 봉사활동 (논문심사실적 편수로 인정)	1	5회까지 인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상 및 수훈(연구관련 이외)	5	"	
	민간단체 수상(연구관련 이외)	1	"	
	대입 수학능력고사 출제위원	1	"	
	각종 국가고사 출제, 검토, 채점 위원(민간단체 제외)	2	출제 2점, 검토 1점, 채점 1점	
	언론 매체 칼럼 게재	1	5회까지 인정	
	전국 규모 학술대회 및 이에 준하는 전국규모 대회의 조직 및 운영 위원	2	"	
비고	1. 대학은 업무량에 따라 배점을 차등 부여할 수 있다. 2. 각종 민간단체 임원 및 위원의 경우 자문위원, 고문(위원), 자문교수 및 정식 직제에 없는 직위는 제외한다. 3. 해당 봉사영역 평가 항목의 배점을 초과한 업적을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타 봉사활동’의 업적으로 옮겨 인정할 수 없다. 4. 삭제 5. ‘교수업적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기타 교내봉사활동’의 경우 전문가나 연구진으로 정식 위촉되지 않고 각종 회의, 협의회, 토론회 등에 출석, 참석한 것은 제외한다. 6. 삭제(개정 2016.4.27.) 7. ‘교수회의 참여’란 회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일과시간 이후에는 18시까지 인정한다.			

[별표 4] 평가영역별 반영비율(%)

교육영역	연구영역	봉사영역	선택
45	35	15	5

* 단 선택영역을 어느 영역에 합산할 것인지는 평가기간 종료 뒤 교수가 선택할 수 있다.

[별표 5] 점수의 계산방법

구 분	계 산 방 법
교 육	1. 세부평가항목별로 산출된 학기별 원점수를 합하여 평가대상 학년도 원점수로 한다. 2. 취득점수는 원점수를 순위 점수로 변환한 점수이다. [순위 점수 = (101점) - (자신의 순위)]
연 구	1. 연구영역의 원점수는 공통평가항목의 원점수 총점과 미술·음악·체육 부문 추가 평가항목의 원점수 총점을 더한 점수이다. 2. 취득 점수는 원점수를 순위 점수로 변환한 점수이다. [순위 점수 = (101점) - (자신의 순위)] 3. 연구 영역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은 원점수 360점 이상은 모두 1등으로 처리하고, 원점수 360점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2등부터 순차적으로 순위를 부여한다.
봉 사	1. 세부평가항목별로 산출된 원점수를 합산한 평가대상 학년도 원점수로 한다. 2. 취득점수는 원점수를 순위 점수로 변환한 점수이다. [순위 점수 = (101점) - (자신의 순위)]
비 고	1. 세부평가항목별 점수는 모두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표시한다. 2. 각 영역에서의 동점자는 동일 순위를 부여한다. 3. 합산점수의 동점자는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 순으로 점수가 높은자를 우선한다. 4. 교내 봉사영역 원점수 15점을 S 등급의 필수조건으로 한다.

[별표 6] 성과연봉 최하위 C등급 공통기준<개정 2026.2.26.>

영역별	공통기준
교 육	○ 매 학년도 책임시수 미달(1시간 이상) 교원 - 폐강 등의 미충족 사유 발생시 업적평가 위원회를 거쳐 적용 여부 결정 - 학기 중 임용 신입교원(1년 미만자), 보직교원, 연구년교원(6개월 이상), 전임 총장(평가대상기간 중 교원으로 복귀한 경우), <u>임신·출산·불임·난임 치료로 휴가(병가)·휴직자(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u>, 파견자·휴직자(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직위해제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함
연 구	○ 평가 연도 2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이상 논문(제1(교신)저자 또는 공동저자), ISBN을 부여받은 저·역서(교과서)(단독 또는 공동) 가운데 어느 1편도 없는 교원 - 단, 예술계열 및 체육계열은 위 항목 또는 교원업적평가 규정 [별표 2] 연구영역 평가지표 중 배점이 70점 이상의 개별점수가 없는 교원 - 신입교원은 임용 3년차 평가부터 적용 - 전임총장은 재임용 후 3차년도 평가부터 적용
윤 리	○ 해당연도 성과연봉 지급대상기간 중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 제1항이 정하는 연구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 등) 사실이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확정(판정)된 경우 - 사실이 확정(판정)된 성과연봉 지급 당해 연도 1회에 한하여 미지급 ※ 연구부정행위가 확정(판정)되어 성과연봉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판정)이 불복구제절차를 거쳐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미 지급된 연도의 성과연봉기준액을 소급하여 지급 ○ 평가대상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및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3 등에 따른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등에 따른 징계사유 시효가 5년인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